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80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이성윤 · 서삼석 · 조정식
문정복 · 이원택 · 박균택
윤준병 · 안호영 · 이건태
김승원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제혁신 등을 규정하면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두고 있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조세의 감면)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과 투자진흥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4조의3(부담금 등의 감면)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개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및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4조의2(조세의 감면) 투자진흥</u> <u>지구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위</u> <u>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의</u> <u>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과 투</u> <u>자진흥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u> <u>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u> <u>법」, 「관세법」 및 「지방세</u> <u>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u> <u>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u> <u>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u> <u>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74조의3(부담금 등의 감면) 투</u> <u>자진흥지구의 원활한 개발 시</u> <u>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u> <u>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u> <u>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u> <u>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u> <u>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u> <u>「산지관리법」, 「초지법」 및</u> <u>「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u> <u>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u> <u>비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u> <u>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u>

	<u>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및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	---